

제1주제논문

손해배상청구 관련 조정중재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장 재 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제1중재부장)

목 차

손해배상청구청구 관련 조정중재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I. 언론조정중재제도 개관	10
1. 언론보도에 따른 법적책임	10
2. 관련 분쟁 해결기관	10
3. 언론조정중재제도	10
II. 언론 보도 시 유의할 점 일반	13
III. 손해배상청구 관련 최근 주요 조정중재사례 및 보도 시 유의할 점	14
1. 피해자의 동의여부 및 범위가 쟁점인 사례	14
2. 초상권 침해 관련 사례	24
3. 사실보도지만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31
4. 포털에 대해 독자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2
5. 방송출연자에 대한 비방성 댓글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해 문제된 사례	35

손해배상청구 관련 조정중재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¹⁾

장 재 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제1중재부장)

I. 언론조정중재제도 개관

1. 언론보도에 따른 법적책임

- 민사책임 : 손해배상청구 등(민법 제750조, 751조 1항, 764조)
- 형사책임 :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형법 제309조)
- 특별법에 따른 책임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²⁾ 상 정정보도청구 등

2. 관련 분쟁 해결기관

- 법원 : 제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절차진행
- 언론중재위원회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언론조정중재 사건 담당 - 임의적 절차

3. 언론조정중재제도

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1981년에 도입

1) 본고는 발표용 자료일 뿐 연구논문이 아니므로 인용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밝혀 둠.

2)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단일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된 이래 2011. 4. 14.까지 4차례 걸쳐 개정됨. 이하 '언론중재법' 또는 '법'이라고 약칭.

— 설치 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³⁾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1조)

나. 조정 및 중재 —손해배상청구 관련⁴⁾

1) 조정

—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법 18조 2항)

— 조정 성립 시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법 23조)

2) 중재

— 당사자 양쪽은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법 24조 1항)

—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법 25조 1항)

다. 대상 매체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 등’ 이라고 함, 법 2조 1호, 18호, 20호)

라. 금지행위 및 면책규정

— 언론 등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3) 2009년경 언론보도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매개만 하는 포털뉴스나 언론사닷컴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추가됨.

4) 법에서는 언론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와 관련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본고는 손해배상청구를 중심으로 기술함.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법 5조 1항)

— 다만,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 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법 5조 2항)

-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마. 판단의 준거

— 언론의 자유 신장과 인격권의 보호라는 두 기본권의 조화로운 해석 즉,

1)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과 이에 대한 규제, 간섭 불허.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 및 취재정보의 공표권 보장 조항(법 제3조)과 2) ⊖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임무를 수행한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조항(법 4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의 이익을 형량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됨.

바. 손해배상의 내용

—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 관련 규정(법 30조)

1)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위 규정은 법원에 제소한 경우에 관한 것.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조정중재 사건의 경우에도 위 조항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산정

보도 동기, 당사자의 동의 유무, 유포의 정도(발행부수, 독자층의 구성, 기사의 크기 및 보도매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횟수, 보도의 진실성, 비방의 정도, 사회적인 관심도, 보도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결정함.

II. 언론 보도 시 유의할 점 일반

— 자신의 보도가 I.의 라.항에 기재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를 판단한 이후 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 될 것임.

다만, 보도내용이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유 즉,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도할 수 있음.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가동하여야 할 준거는 I.의 마.항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

1) 피해자 특정 요건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

하여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보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보도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음.

2) 구체적 사실의 적시 요건 : ㉠ 기사가 그 전체로 보아 그 사실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할 경우 타인의 말을 전달하는 형태도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있음 ㉡ 기사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주는 특정한 제목, 표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독자가 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명예훼손 성립가능.

III. 손해배상청구 관련 최근 주요 조정중재사례 및 보도 시 유의할 점

1. 피해자의 동의여부 및 범위가 쟁점인 사례

가. 미담기사여부 불명, 동의 없는 성명과 초상의 공개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된 사례

(2011서울중재95, 손해배상 조정신청 사건에서 전환됨)

1) 사건의 개요

2011. 2.경 피신청인 발행의 ○○신문은 “15년 만에 쓴 학사모...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방송통신대 졸업한 000씨”라는 제하에 신청인이 방송통신대를 15년에 걸쳐 30학기 만에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실을 소개함. 그 기사에는 신청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방송통신대를 다닌 것이며, 신청인의 원래 전공은 성악이고 피아노 학원을 운영한 사실, 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열정에 재수강을 거듭하느라 등록학기가 30학기에 이른 것으로 기재됨. 기사 우측상단에 학사모를 쓴 신청인 및 2명의 다른 졸업생 사진을 싣고 사진 아래쪽에 신청인의 성명 및 사진 속의 위치를 표시함.

신청인은 『신청인의 초상, 성명, 나이 등을 기재하지 말 것을 기자에게 요청하였음에도, 피

신청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 기사가 신청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미담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게재한 것이다. 그러나, 미혼인 신청인은 자신의 나이 등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 알려짐으로써 보도를 접한 친척, 친구들과의 말싸움, 의욕상실, 대인기피 및 이로 인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방통대 졸업생들의 사연은 모든 언론사의 관심사이고 역경을 딛고 졸업장을 받은 신청인의 사연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실은 점은 인정. 다만, 인터뷰를 마친 뒤 신청인이 ‘나이와 사진은 빼 달라’고 이야기 하자 취재기자는 ‘나이는 뺄 수 있는데 인물 면에 게재되는 기사라 사진은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으나 신청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를 사진게재에 대한 동의로 판단함. 신청인의 기사 삭제요구 후 즉시 신문사 홈페이지 및 주요 포털에 연락해 해당 기사 삭제함. 조정신청이 있는 후 사회부 차장을 통해 신청인에게 사과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100만원 정도의 배상 용의가 있다』라는 답변.

2) 사건 관련 사항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

피신청인 : (주)○○신문

중재부 : 서울제1중재부

접수일 : 2011. 7. 0.

처리결과 : 중재전환 후 중재판정

3) 대상 보도⁵⁾

2011. 2. 0. 피신청인 발행의 ○○신문 기사 “15년 만에 쓴 학사모...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방송통신대 졸업한 000씨” 라는 제하.

5) 대상보도 등을 인용함에 있어 당사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기사에 실명 등이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고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0 또는 다른 부호로 표시한다. 이하 같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30학기 만에 유아교육과 졸업장을 받아든 만학도가 있다.(중략) 000씨가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에 입학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전. 보통 대학을 8학기에 마치는 것과 비교하면 000씨의 30학기는 방송통신대 설립 이후 최장기록이다.(중략) 000씨는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뒤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가르쳐 왔다.(중략) 000씨가 학위취득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30학기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더욱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열정에 재수강을 거듭하느라 등록학기가 30학기에 이른 것이다. 기사 우측상단에 학사모를 쓴 신청인 및 2명의 다른 졸업생 사진을 싣고 사진 아래쪽에 신청인의 성명 및 사진 속의 위치를 표시함.

4)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5) 사건 처리 결과

양 당사자의 중재합의 후 다음과 같이 중재판정

1.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8월 10일까지 1,7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이 유

가.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00신문사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문 2011. 2. 0.자 00면「15년 만에 쓴 학사모…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청인의 초상 및 나이 등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의 초상 및 나이에 대해 보도하지 말 것을 피신청인에게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보도하여 신청인의 초상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

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2011. 7.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금 5,000,000 원을 구하는 조정신청(2011서울조정881)을 하였다가, 2011. 8.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나. 판단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권리라 할 것이다. 이러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 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기사는 신청인의 초상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표될 정도로 중대한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알리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초상 및 나이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등 심한 불쾌감을 느껴 정신적 평온의 침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보도경위, 보도 내용 및 신청인의 나이·직업, 피신청인측 인터넷 기사에 대한 후속조치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 1,700,000원으로 한다.

다. 결론

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보도시 유의점

미담성 기사를 취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사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신원의 노출을 원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상 보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함이 바람직함.

나. 동의 범위를 초과한 보도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된 사례(2011서울조정1031 손해청구)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주식회사 ○○방송 저녁 9시 ○○데스크는 “카드사, 신용카드 금리 수수료 내린다” 라는 취지로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을 소개함. 피신청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개를 받아 신청인을 인터뷰대상자로 선정한 뒤 인터뷰하게 됨. 인터뷰 과정에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영업하는 모습, 얼굴, 성명, 나이, 직업 등 신청인의 신원이 그대로 드러나고 또 신청인이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사실, 아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다시 현금서비스 200만원을 받은 사실, 그것은 리볼빙 대출로서 이자가 연 21%나 된다는 내용이 자막표시와 함께 기자의 내레이션으로 소개됨.

신청인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정책을 알리는 취지에서 자산관리공사 측의 인터뷰 제의에 동의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의 촬영을 용인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였는데, 위 보도로 인하여 자신의 신용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아야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신청인의 인터뷰 전제조건을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신청인이 인터뷰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인터뷰 당시 신청인이 자신의 신원공개여부와 관련한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자 이를 신원공개에 대한 동의로 보아 위와 같이 보도하였다고 주장.

2) 사건 관련 사항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

피신청인 : (주)○○방송

중재부 : 서울제1중재부

접수일 : 2011. 8. 31.

처리결과 : 조정성립

3) 대상 보도

2011. 8. 0. 저녁 9시 ○○데스크 “카드사, 신용카드 금리 수수료 내린다” 제하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서비스를 보통 리볼빙이라고 하는데요. 이자가 사채이자만큼 비쌉니다.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요구로 리볼빙과 연체이자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000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000씨 신용카드 대출 800만원도 아직 못 갚았는데, 최근에 또 현금서비스를 받았습시다. 조금씩 나눠 갚으면 된다는 리볼빙 대출이었지만 문제는 이자가 연 21%나 됐습시다.” 위 내레이션과 함께 신청인의 얼굴이 드러난 상태에서 인터뷰하고 식당의 모습이 여과없이 소개되며, 자막 -000(37세, 식당운영) 현금서비스 2백만원 받았어요. 방학때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10%만 있으면 된다더라고요-이 제시됨

4)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5) 사건 처리 결과

양 당사자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조정성립.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 21일까지 1,000,000 원

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6) 보도 시 유의점

취재 상대방을 소개한 자료부터 취재승낙의 뜻만 전해 들었을 뿐, 신원의 노출과 관련한 동의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재상대방이 인터뷰에 응하고 자신과 관련한 촬영을 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곧바로 신원노출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임의로 해석하여 취재상대방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여서는 곤란함.

다. 미답성 기사이지만 신원노출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2010서울조정916)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일보는 조정대상기사에서 지난 2007년 할아버지와 함께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소년이 부모 없이도 남한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해가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위 소년이 국군포로 출신의 탈북자인 신청인의 손자라고 함.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전협의 없이 기자가 학교로 찾아가 손자를 취재하고 사진을 찍은 후 집으로 찾아와 신청인에게도 사진을 찍자고 함. 신청인은 사진, 이름 등 어떤 것도 실을 수 없다고 하자 기자는 손자에 대해서만 쓰겠다고 함. 그러나 보도에서 신청인과 손자의 실명을 비롯, 손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이름 및 학년 등과 함께 신청인 가족이 북한에서 겪었던 과거사 등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신청인의 신원이 북한 당국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에 두고 온 신청인의 남은 가족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다』라고 주장.

피신청인은 북측에 신청인의 가족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사실에 기초한 미답성 기사라고 답변.

2) 사건 관련 사항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

피신청인 : 주식회사○○일보사

증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0. 5. 25.

처리결과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1,500만원)

3) 대상 보도

2010. 5. 0. 자 ○○일보 A13면 『탈북소년 ○○이 “올해는 외롭지 않아요”』 제하의 기사- 친구와 자전거를 타면서 밝게 웃고 있는 ○○○군의 사진 첨부됨

5일 오후 4시쯤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서울○○초등학교 6학년 양○○(12)군이 같은 학교 친구 ○○(12)군과 함께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2007년에 탈북한 ○○군이 이렇게 어린이날 나들이를 하기는 처음이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부모가 없어 쓸쓸하게 어린이날을 보냈다. 하지만 올해는 친구 ○○군 가족의 초대로 함께 어울리며 어린이날다운 하루를 보냈다. …

○○군은 지난 2006년 한국에 온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 ○○(78)씨의 손자다. ○○군 가족은 2003년에도 탈북했지만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에 잡혀 6개월간 감옥생활을 했다. ○○군은 “부모님은 그때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던 동생은 행방불명됐다”고 답답하게 말했다. ○○군은 올해 학급회장을 맡을 정도로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담임교사 ○○씨는 “사정을 들을 때까지 북한 출신인줄 몰랐다. 의젓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이라고 했다....할아버지 ○○씨는 “부모도 없는데 밝게 자라고 있어 그저 고마울 뿐”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4)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5) 사건처리결과

중재부에서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함.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6) 보도시 유의점

취재 상대방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가 예상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그러한 우려를 표명한 경우에는 미담성 기사라 하더라도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함이 바람직함.

라. 연애문제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도하여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례

(2011서울조정657 손해청구)

1) 사건의 개요

조정대상기사는 신청인이 전 애인을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됨. 지극히 사적인 사항들이 기사내용에 포함됨. 해당 기사에 대해 먼저 문제를 삼은 사람은 신청인의 전 애인이었던 남자 A씨. A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언론사는 기사를 삭제함과 아울러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

그 후 신청인 측에서 기사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청인은 기자와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보도되는 것에 동의한 바는 없다고 주장. 또, 자신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성) 및 남자 친구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되었음은 물론 과장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 배신녀로 묘사되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지적.

결국, 언론사는 신청인에게 1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

2) 사건 관련 사항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

피신청인 : (주)○○○아이(○○뉴스)

증재부 : 서울제2증재부

접수일 : 2011. 6. 7.

처리결과 : 조정성립

3) 대상 보도

2011. 5. 0. ○○뉴스 「연인에서 앙숙으로 ... “줬던 선물 다 내놔” 협박에 고소로 맞불」 제하의 기사

그녀는 예뻐다. 솜털이 남아 있던 ○○○(○○, 여, 가명)씨의 하얀 얼굴은 웃을 때마다 발그스르하게 물들었다. ...

A씨는 작고 예쁜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천천히 다가갔고, 둘은 연인이 됐다. 벌써 ○년 6개월도 지난 일이다.

항상 밝은 ○씨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종종 그늘이 드리웠다. 갓 학생 티를 벗은 여대생이 ... 흠어머니를 모시고 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다니던 A씨는 ○씨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

매달 용돈(10만원)을 주고 기념일이면 선물을 아끼지 않았다. 등록금까지 내줬다. 그렇게 그녀에게 쓴 돈이 400만원이 넘었다.

○씨에게 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다만 A씨는 ○씨의 모든 것이 궁금했다. 집에 있다는 ○씨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전화를 하고, 자고 있다는 그녀를 깨워달라고 했을 뿐이다. ○씨는 언제부터인가 A 씨의 이런 행동을 답답해하는 것 같았다.

한 달 전,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씨에게는 곧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 A씨는 가슴 속에서 끌어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용돈을 주고 등록금까지 대신 내줬는데 자신에게는

돈만 받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다. ○씨를 찾아가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 동안 선물한 물건 값을 물어내라’, ‘평생에 가장 후회할 일이 될 만큼 힘들게 만들겠다’ ...

헤어진 뒤 수차례 협박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아온 ○씨는 결국 A씨를 고소했다.
(후략)

4)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5) 사건 처리 결과

신청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6) 보도시 유의점

A씨와 관련하여 볼 때 비록 수사기관에 고소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적인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함. 직접 취재한 ○씨에 대하여도 그가 인터뷰에 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A씨를 고소한 내용을 이 사건 보도와 같이 세세하게 표현하는 형태의 보도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임.

2. 초상권 침해 관련 사례

가. ‘길거리스케치’ 보도를 통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된 사례(2010서울조정1532 손배청구)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주)○○○투데이는 조정대상기사에서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시작된 날 아침 서울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두터운 목도리와 점퍼로 중무장을 하고 잔뜩 움츠린 채 출근길을 서두르

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게재함.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신문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도 없고, 위 사진기사로 직장에서 놀림감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

피신청인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인정.

2) 사건 관련 사항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 ○ ○

피신청인 : (주)○○○투데이

중재부 : 서울제6중재부

접수일 : 2010. 11. 29.

처리결과 : 조정성립

3) 대상 보도

2010. 11. 0. ○○○투데이 8면 『춥다 추워』 제하의 사진 캡션 기사

서울 영하 3도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출근길 시민들이 두터운 목도리와 점퍼로 중무장하고 잔뜩 움츠린 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4)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5) 사건 처리 결과

양 당사자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조정성립.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0년 12월 23일까지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시한다.

「본지는 지난 11월 0일 ‘줍다 추워’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내보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혀드렸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다하여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도내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본지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6) 보도시 유의점

사진에 찍힌 사람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일 경우, 기사의 내용에 따라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가 예상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이후 보도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함.

나. 잠입취재 시 몰카로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사례(2010서울조정1410 손배청구)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공사는 조정대상 보도에서 베트남에 여행을 간 한국인들이 마취 상태의 곰으로부터 채취한, 안전이 의심스러운 쓸개즙을 구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유리컵 속에 든 쓸개즙을 보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내보냄.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곰 농장 방문은 여행 패키지 상품의 일정에 따른 것으로 자신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는 장면을 보고 경악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고발 프로그램에 자신의 초상이 아무런 승낙도 없이 공표되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함.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한편, 프로그램 총책임자(CP)

가 신청인에게 사과서신을 발송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됨.

2) 사건 관련 사항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

피신청인 : ○○○○공사(○○○TV)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10. 10. 20.

처리결과 : 조정성립

3) 대상 보도

2010. 9. 0. ○○○TV 「○○○고발」 ‘충격보고! 초저가 해외여행의 실체’ 제하의 방송

(전략)

리포터 : 베트남에서 한국 여행객들을 상대로 판매되고 있는 곰 쓸개즙. 좁은 우리 안에 곰을 가뒀다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바로 곰을 마취하고 쓸개즙을 채취합니다. 여행객들이 구입한 곰 쓸개즙, 과연 먹어도 안전한 것일까?

(후략)

4)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5) 사건 처리 결과

양 당사자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조정성립.

1. 피신청인은 2010년 11월 5일까지 ○○○고발 프로그램 총책임자(○○○ CP) 명의(자필 서명 포함)로 된 서신을 신청인에게 송부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아 래-

○○○고발은 지난 9월 0일 <충격보고! 초저가 해외여행의 실체>편에서 동남아 여행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최근 횡행하고 있는 저가 패키지여행의 폐해를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이와 같은 저가 여행 상품의 실체를 인식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제작진의 이와 같은 노력과 성의에도 불구하고, 짧은 제작 기간과 밤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 씨의 모습이 적절한 처리 없이 방송되어 여러모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제작진을 대표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고발 제작진은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 씨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피해 구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신청인의 해량을 바랍니다.

2. 피신청인은 2010. 11. 5.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 포털 검색을 통해 발견한 미용실 홍보용 공개 사진을 뉴스에 사용한 사례

(2011서울조정658·659 정정 및 손배청구)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방송사는 2011년 5월 0일 ○○○ 아침뉴스타임 내 ‘살림충전’ 코너에서 알뜰 웨딩을 주제로 조정대상 보도를 방송. 해당 보도의 주된 취지는 고비용 결혼식이 팽배한 요즘, 20만 원에 불과한 저렴한 비용으로도 실속 있고 질 좋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해당 보도를 제작함에 있어서 결혼 준비에 필요한 항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헤어메이크업’ 이미지가 필요함. 제작진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미지(웨딩드

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이미지)를 선택함. 이미지 선택 후 출처를 확인해보니, 미용업체 소속 헤어디자이너의 블로그에 전체 공개로 되어 있는 사진이었고 해당 미용업체 홍보 차원에서 공개한 이미지로 보여 제작진은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의 이미지를 사전 동의 없이 방송에 사용함.

신청인은 자신의 이미지를 웨딩업체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했지만, 방송에 사용하는 것은 동의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저가의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함.

2) 사건 관련 사항

청구명 :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

피신청인 : ○○○○공사(○○○TV)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11. 6. 8.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대상 보도

2011. 5. 0. ○○○TV 「○○뉴스타임」 ‘알뜰결혼대작전’ 제하의 보도

<앵커 멘트>

5월은 가정의 달이라지만 결혼의 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결혼식 참 많죠?

네, 5월의 신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비부부들은 마냥 들뜬 마음으로 결혼식 준비하기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걱정도 앞서죠.

수요일의 알뜰정보 전해주시는 이 분께 도움을 청해볼까요.

000기자, 잘 알아보면 알뜰하게 결혼하는 법, 있다고요.

네,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결혼을 위해 쓰는 돈이 무려 15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행복해야 할 결혼이 갈등을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20만원이면 결혼 비용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합니다.(후략)

4) 신청 취지

1. 피신청인은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보도문>

- 제 목 : 본 프로그램의 2011년 5월 0일자 ‘알뜰결혼대작전’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사의 2011년 5월 0일자 ‘알뜰결혼대작전’ 방송 중 배경화면으로 사용한 사진은 위 방송과 전혀 무관하게 입수한 자료로서 사진 속의 인물은 그러한 방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을 알립니다.

5) 사건 처리 결과

중재부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함. 양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어 위 결정은 확정됨.

6) 보도시 유의점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공개된 사진 등이라 할지라도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인격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 후 그러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의 사 용승낙을 얻거나 또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인용함이 바람직함.

3. 사실 보도지만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2010전북조정27 손배청구)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주)○○뉴스⁶⁾는 조정대상기사에서 강간치상혐의로 만기출소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친누나를 강간해 긴급체포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인 동생과 피해자인 누나의 성과 나이, 이들이 거주하는 동 이름 등을 적시함.

이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은 이 보도로 인해 주변인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함.

피신청인 측은 경찰의 자료를 근거로 보도하였고 반인륜적인 범죄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보도한 것이라고 답변.

2) 사건 관련 사항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 ○ ○

피신청인 : (주)○○뉴스

중재부 : 전북중재부

접수일 : 2010. 9. 7.

처리결과 : 조정성립

3) 대상 보도

2010. 8. 0.자 ○○뉴스 『강간치상혐의 만기출소 50대, 친누나 강간 -○○경찰, 강간치상혐의로 또 긴급체포』 제하의 기사

6) 규모가 크지 않은 지방언론사임.

(전략) 17일 ○○경찰은 강간치상 혐의로 A(나이. ○○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간치상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이달 13일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였으며, 출소 후 모 아파트에서 자신의 누나 B(나이)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이날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누나가 평소 싫어하는 남자와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일명 맥가이버 칼인 등 산용 칼로 누나 B씨의 목 부위를 한차례 긁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런 행동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누나를 강간하는 폐륜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후략)

4)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백만 원을 지급하라.

5) 사건 처리 결과

심리 당시 중재부의 권고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시한 다음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어 조정 성립.

6) 보도 시 유의점

피신청인이 비록 경찰보도자료를 근거로 보도하였다고 하나, 동생이 교도소에 갔다 오고, 50대의 나이에 누나랑 같이 살고 있었다는 점과 거주지 동명, 그다지 흔하지 않은 피해자의 성씨가 기재됨으로써 지역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지인들에 의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보도됨. 범죄사실의 보도가 갖는 공익적 측면에 비하여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심각한 사안이 지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보도됨으로써 입게 될 정신적 고통이 매우 중대함에 유의.

4. 포털에 대해 독자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2010서울조정1421 손배청구)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커뮤니케이션즈(주)는 (주)○○○미디어로부터 조정대상 기사를 전송받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게시함.

신청인은 위 사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추위로 잔뜩 움츠린 채 걷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기사가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한 뒤 즉시 해당 기사를 전송한 (주)○○○미디어와 이를 전송받아 게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에게 해당 사진의 삭제를 요청.

신청인과 기사를 전송한 (주)○○○미디어 측으로부터 사진의 삭제요청을 받은 대부분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은 해당 사진을 삭제함. 그러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서는 요청일로부터 만 하루가 경과되도록 해당 사진이 삭제되지 않음. 그리고 조롱성 댓글이 여럿 올라옴.

이에 신청인은 기사를 작성·전송한 (주)○○○미디어와는 별도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함.

피신청인은 계약상 ○○○경제가 송출한 기사를 전혀 편집하거나 취사선택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

2) 사건 관련 사항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 ○ ○

피신청인 : ○○○○커뮤니케이션즈(주)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 2010. 10. 29.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대상 보도

포털사이트 ‘○○○’가 매개한 2010. 10. 0. ○○○경제의 『“더 빨리, 더 빨리” 사라진 봄 가을 한국인의 기질을 바꾼다?』 제하의 기사

느긋한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더위와 추위만을 오가는 2계절 환경이 되다 보니 안 그래도

다급한 한국인의 성미가 더욱 급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4계절은 한국인 특유의 적응력과 강인함을 키웠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은 계절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졌고 한국인의 DNA에 각인돼 유전돼 왔다.

나른한 봄, 무더운 여름, 건조한 가을, 차가운 겨울 등 4계절은 절기의 특성에 따라 한국인의 오장육부에 건강한 자극을 주고 장기들이 적응하고 제 기능을 하면서 강인함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해 줬다.

그러나 봄과 가을이 실종된 채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추웠다가도 어느날 느닷없이 더워지면서 우리 몸에는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좋지 못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 고대구로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세로토닌 같은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이 계절의 이상 변화로 분비가 불규칙해지면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등 기후가 좋지 못한 지역에서 빈발하는 우울증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 교수는 “우리 몸이 계절 변화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적응해온 패턴이 깨지면서 수면장애나 위장기능 저하 등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호르몬 분비 이상의 영향으로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나 성격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4)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만 원을 지급하라.

5) 사건 처리 결과

중재부는 15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함. 이후 양 당사자가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확정됨.

6) 보도시 유의점

포털사의 경우 원 기사공급처와의 계약상 송출기사를 그대로 실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기사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배상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5. 방송출연자에 대한 비방성 댓글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해 문제된 사례

(2011서울조정1047)

1) 사건의 개요

2011년 9월 0일자 ○○데오 「짜 여자0호, 천사표? 신혼집 파탄낸 불륜녀? 과연 진실 무엇?» 제하의 기사에서는 모 방송사에서 방영 중인 남녀 단체 미팅 TV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는 신청인(미용업)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논란을 ‘불륜녀’란 표현과 함께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방송 출연 장면을 담은 사진까지 공개함. 조정대상기사는 신청인의 방송 출연 이후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루머일 뿐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내용임. 신청인은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

이에 대해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에 대한 루머를 사실로 단정하지는 않았으며, 신청인은 이미 전국적인 방송에 출연하여 일반에 널리 알려졌으므로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2) 사건 관련 사항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

피신청인 : (주)○○데오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11. 9. 6.

처리결과 : 조정성립

3) 대상 보도

2011. 9. 0. ○○데오 「짜 여자0호, 천사표? 신혼집 파탄낸 불륜녀? 과연 진실 무엇?»

- ‘짜 천사표 여자 0호 결국 불륜녀로 확인...충격적인 진실’ 제하의 기사

천사표 출연자라고 불렸던 여자 0호가 불륜녀 의혹에 휩싸여 화제다. 하지만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에 여자 0호의 과거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을 쓴 한 네티즌은 “제 신혼 침대에서도 주무시고 가셨던 분이 천사표로 등장하셨다. 결혼식 후 신혼집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글의 전반적 내용을 요약하자면 글쓴이는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알고보니 그는 여자 0호와 양다리를 걸쳤으며 결혼 직후 여자 0호가 신혼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려 결혼 한달만에 이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중략)

방송 이후 큰 논란을 일으켰던 ○○○ ‘짜’ 여자 0호에 대한 루머가 사실로 확인, 충격을 주고 있다.(후략)

4)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5) 사건 처리 결과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성립

6) 보도시 유의점

기사가 공익과는 무관한 사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 초상권을 침해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 특히 피신청인은 게시판에 특정 글이 게시되어 있다는 상황을 전달하고자 하였다고 변명하나 특정 글을 인용 전달하는 경우에도 그 기사가 전체로 보아 그 사실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할 경우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에 유의.